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62
------	-----

2019. 6. 18.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23일, 김정태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6.18) 상정, 검토보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정태 의원)

1. 제안이유

-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므로 책임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바, 진흥원 내부에서

직무대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감사의 비상근 조항을 삭제하여
진흥원의 자율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비상근 규정 삭제(안 제7조제4항 삭제).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의 상임이사를 대표이사
로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 복수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과 책임경영
약화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산업진흥원 이사 현황과 문제점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는 산업진흥원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7조).
- 현재 산업진흥원의 이사는 총 9명으로, 대표이사와 노동이사를 포함한
선임직이사 6명과 정관에서 규정한 3명의 당연직이사¹⁾로 구성되어
있음(이사현황은 붙임자료 1 참고).
- 산업진흥원의 유일한 상임이사인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정관 제13조 제2항).²⁾

1)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9조 제2항에서는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시 재정기획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당연직이사로 정하고 있음.

2)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9조(임원의 임면) ② 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

- 이러한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직전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사임해 현행 대표이사의 임명까지 약 9개월 동안(2018.2.19.~2018.11.1.) 대표이사 공백상태에 있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진흥원 기관장의 평균 공석 기간이 5개월에 달했음.

<최근 산업진흥원 대표이사의 공석기간>

대표이사	재임기간	공석기간
심일보	2007.07.01 ~ 2010.06.30	약 7개월
변보경	2011.02.16 ~ 2012.03.02	약 2개월
이전영	2012.05.15 ~ 2015.05.14	약 2개월
주형철	2015.07.01 ~ 2018.02.13	약 9개월
장영승	2018.11.01. ~ 현재	

- 이처럼 직무대행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직무대행자인 서울시 경제일자리 기획관의 업무 부담과 책임이 가중되었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기 되었음.
- 이에 기관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임명권 행사와 함께 불합리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음.

하며, 선임직이사에는 근로자이사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3.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의 당연직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그 동안 산업진흥원은 직무대행자를 내부인사로 변경하려고 개선을 검토 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은 등기이사(임원)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내부직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이 있어 현재 단일 상임이사 체제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한편, 서울의료원과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서울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 에서 상임이사는 기관장 1명이고, 기관장의 직무대행을 대부분 당연직 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맡도록 하고 있음³⁾.
- 이처럼 서울시의 담당국장이 출자·출연기관의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출자·출연기관 장의 부재시에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의 규모와 업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당연직이사인 서울시의 국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성과 경영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함.

다. 이사 및 감사의 비상임 규정 삭제(안 제7조 제4항)

3)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음.

-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서울시의 담당 국장이 아닌 기관내부의 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와 감사의 비상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특히, 고유업무의 성격이 정형적이고 안정적인 다른 출자·출연기관들과 달리, 산업진흥원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혁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입법 후에는 상근이사의 숫자가 산업진흥원의 정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증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본 개정안에 대해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상근직 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산업진흥원의 정관을 통한 무변별한 상근임원의 증원을 제한하고 대표이사 공석시에 상근임원을 통한 원활한 직무대행 수행을 위해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

나. 수정안 주요 내용

- 시장이 이사장, 대표이사, 상근임원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62
----------	-----------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산업진흥원의 정관을 통한 무분별한 상근임원의 증원을 제한하고자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장이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도록 함 (안 제7조 제2항).
-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근임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를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으로 하고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임원) ① (생략)</p> <p>② <u>이사장은 이사 중에서</u> 시장이 임명한다.</p> <p>③ (생략)</p> <p>④ <u>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u></p>	<p>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align="center"><삭제></p>	<p>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u> 시장이 임명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들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를 “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으로 하고,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임원) ① (생략)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사장은 이사 중에서</u> 시장이 임명한다.	② <u>대표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 직 이사 및 감사</u> 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u>	④ <u>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 중 상근임원은 2명 이내로 들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상근으로 한다.</u>